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9.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 2017.9.25.,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4641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 중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지도 · 감시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직원에서 축산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수입 30일 전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수입초생추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수입허가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서식의 영문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제정 · 개정문】

**제3조의5제4항제3호** 중 “차량 소독조”를 “차량의 바퀴·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20조의제7항** 중 “축산관계시설”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 ·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을 “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 · 감시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 ·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제30조제3항**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 ·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중 “(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4** 제3호가목 중 “축사입구 그물망”을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으로 한다.

**별표 14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아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 앞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